

# 사업장폐기물배출자 [ ] 신고서 [ ] 변경신고서

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신고인	① 상호(명칭)	② 발주자와의 관계	
	③ 성명(대표자)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(배출현장) (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: , 전화번호: )		
	⑥ 업종	⑦ 사업자등록번호	
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	⑧ 공사명	⑨ 공사기간	
	⑩ 발주자	상호(명칭)	
		성명(대표자)	
주소 (전화번호: )			

##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

⑪ 폐기물			⑫ 배출량	⑬ 운반		⑭ 처리			
구분	종류	분류번호		운반자	운반량	처리구분	업소명	처리방법	처리량
		□□-□□-□□							
		□□-□□-□□							
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									
⑯ 폐기물 보관방법									
⑰ 변경사항			변경 전			변경 후			
⑱ 변경사유						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 ] 제18조제2항 [ ] 제18조제4항 에 따라

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[ ] 신고 [ ] 변경신고 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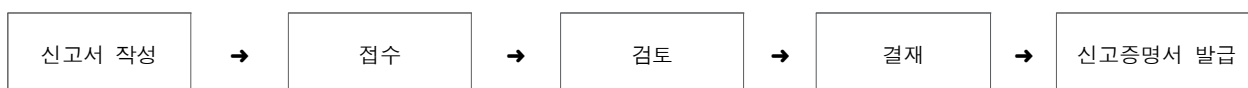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<p>1. 신고를 하려는 경우</p> <p>가. 수탁처리능력확인서(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 <p>나.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(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)</p> <p>2.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</p> <p>가. 수탁처리능력확인서(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 <p>나.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p> <p>다.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</p> <p>라.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(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)</p>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**작성방법**

-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.
- ⑥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배출현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「산업입지법」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으로 적습니다.
- ⑦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(소분류)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.
- ⑪란 중 구분란에는 "0"으로 적고,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비(非)배출시설계 폐기물,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하여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.
-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"자가"로,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.
- ⑭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"자가"로, 위탁처리의 경우는 "위탁"으로 적고,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.
-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, ⑰란 및 ⑱란만 적습니다.

**처리절차**



신고인

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